

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

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
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

2024년 인증 신청기간

연중 접수



2024년 인증 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*(www.seis.or.kr)

* 사회적기업 포털(통합사업관리시스템) 로그인
① 인증·지정관리 ② 인증관리
③ 인증신청서 제출 ④ 인증신청서/구비서류 첨부/유급근로자 명부 작성 ⑤ 인증신청서 제출

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

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·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·단체 등을 설립하여야 합니다.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%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☑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필요시,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진흥원(센터)을 통해 사전상담 및 안내를 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* 단, 심사 공정성·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증 기본요건, 필수서류 안내 등 기본적인 내용만 상담

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상담 안내

전국 대표번호: 1551-2024

해당 권역 진흥원(센터) 자동 연결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현황

권역	구분	센터명	주소	전화번호
서울1	통합	소셜캠퍼스 온 서울 (성수)	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, 9층	02-467-2516
서울2	일반	소셜캠퍼스 온 서울 (당산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6층	02-3667-8407
인천	일반	소셜캠퍼스 온 인천	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(송도동) 애니오션빌딩 11, 12층	032-858-7671
경기1	통합	소셜캠퍼스 온 경기 (성남)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, 6층	031-757-2542
경기2	일반	소셜캠퍼스 온 경기 (양주)	경기도 양주시 덕계로 140 진산메디프라자빌딩 4, 5층	031-868-8061
강원	일반	소셜캠퍼스 온 강원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누리관 1, 2층	033-748-8661
광주	통합	소셜캠퍼스 온 광주	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, 5, 6층	062-946-2166
전남	일반	소셜캠퍼스 온 전남	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(호남동) 주식회사 KT 목포빌딩 9층	061-247-9904
전북	일반	소셜캠퍼스 온 전북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DNB빌딩 5, 6층	063-223-2501
제주	일반	소셜캠퍼스 온 제주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관 3, 4, 6층	064-749-7540
세종	통합	소셜캠퍼스 온 세종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&G세종타워A 6층	044-903-0782
대전	일반	소셜캠퍼스 온 대전	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 눈높이 사옥 3, 4층	042-489-5790
충남	일반	소셜캠퍼스 온 충남	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3 용주프라자 3, 4, 5층	041-549-7762
충북	일반	소셜캠퍼스 온 충북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3가 15-1 우민타워 3층	043-259-8771
대구	통합	소셜캠퍼스 온 대구	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, 11층	053-431-9826
경북	일반	소셜캠퍼스 온 경북	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) 경상북도경제진흥원 6층, 8층	054-476-6519
부산	통합	소셜캠퍼스 온 부산	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5, 6층	051-753-2506
울산	일반	소셜캠퍼스 온 울산	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극동방송빌딩 7, 8층	052-276-2506
경남	일반	소셜캠퍼스 온 경남	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김해대로 2367 에스엠이 김해빌딩 7층	055-338-276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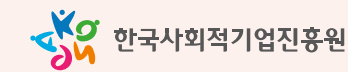
* 통합센터: 공공행정 지원, 안내 및 상담 ☆ 일반센터: 안내 및 상담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진흥원(본원)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~8층
www.socialenterprise.or.kr
Tel. 031-697-7700 Fax. 031-697-7889



2024 사회적기업 안내



사회적기업이란

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
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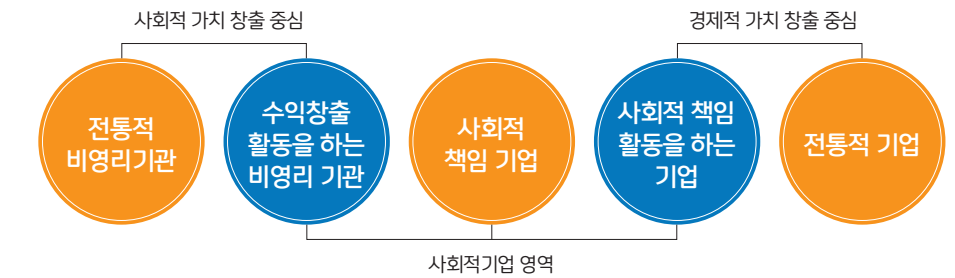
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,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

☉ 사회적기업
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

☉ 예비사회적기업

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



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



목적



수단

사회적 가치 실현,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공헌

경제활동, 생산 및 영업활동, 이윤 창출 및 재투자

사회적기업 인증 요건

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

사회적기업	구분	예비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 육성법	법령	조례 또는 규칙, 지침
고용노동부 장관 인증	주관	광역자치단체장, 중앙행정기관장 지정
① 조직형태	요건	① 조직형태
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		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)
③ 사회적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·사회서비스 제공 등)		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(취약계층 고용·사회서비스 제공 등)
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		④ -
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(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)		⑤ -
⑥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		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
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		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상시 접수	신청	연중 일정 공고

1. 조직형태

- 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
- ☑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

· 주식회사	· 합명회사	· 농업(어업)회사법인	· 사단법인	· 사회복지법인
· 유한회사	· 합자회사	· 영농(영어)조합법인	· 재단법인	· 공익법인
· 유한책임회사	· 합자조합	· (사회적)협동조합	· 재단법인	· 비영리민간단체

2. 유급근로자 고용

- 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
- ☑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
 - * 단,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 고용
 - **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,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함
- ☑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

3. 사회적 목적의 실현

- ☑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
- 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

사회서비스 제공형	·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일 것
일자리 제공형	·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
지역사회 공헌형	·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,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가형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: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% 이상 - (가형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: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 - (나형) 지역의 빈곤·낙후·소외·재난·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 - (다형)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혼합형	·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일 것
기타 (창의·혁신)형	·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-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하되,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 동 유형으로 불인정

- ☑ **(취약계층 정의)**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,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(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조)
 -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, 외국인근로자,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, 학교폭력 피해자, 학교 밖 청소년, 중증질환자,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단력적으로 인정

취약계층이란	· 저소득자 · 고령자 · 장애인 · 성매매피해자	· 청년, 경력단절여성 중고용촉진 · 장려금 지급대상자 · 북한이탈주민 · 가정폭력 피해자	· 한부모가족지원법상보호대상자 · 결혼이민자 · 광생보호 대상자 · 범죄구조피해자
기타 (장기실업자, 수형자, 소년원생, 보호관찰 청소년, 노숙인, 약물 등 중독자, 선천성 또는 희귀 난치병 치료자, 여성가장, 난민, 보호종로아동, 청소년쉼터 등에 입소한 자 등)			

사회서비스란	· 교육 · 보육 · 보건	· 사회복지 · 환경 · 문화예술, 관광 및 운동서비스	·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·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 · 간병 및 개인서비스	· 가사지원 · 산림보전 및 관리 · 기타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사회적가치지표(SVI) 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개요)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·평가하는 지표 - (활용) 사회적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의 사업 연계 등 활용 - (구성) 총 14개 지표(사회적 성과(9개 지표, 60점), 경제적 성과(4개 지표, 30점), 혁신 성과(1개 지표, 10점) 등 100점 만점) 구성 * 기타(창의·혁신)형은 상기 지표 중 5개 지표(3, 6, 11, 12, 14번)만 측정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4.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- ☑ 사회적기업은 근로자,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
 - *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(불가피한 경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 인정 가능)
- ☑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

5.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- ☑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% 이상이어야 함
 - * 단,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
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	노무비
·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(=매출액) * 보조금, 기부금 및 단순 지원금 등은 해당하지 않음 ·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 제외	· 포함: 급여, 제수당, 상여금, 일용임금, 퇴직금(지급금) · 제외: 교육훈련비, 퇴직급여충당금,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, 용역비 등

- ☑ 단, 자본 완전잠식,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(매출액의 규모, 수익구조 등)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

6. 정관의 필수사항

- ☑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(10가지)을 반드시 갖춰야 함
- ☑ 필수사항

① 목적	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
② 사업내용	⑦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
③ 명칭	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
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⑤ 기관의 의사결정방식	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7.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

- ☑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
- ☑ 정관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조건 개선, 사회공헌사업, 시설투자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
 - *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 등의 경우에 해당함
 - **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, 지정 이후 배분 가능한 이윤 사용내역 검토

사회적기업 지원제도

지원제도	지원내용	지원대상	
		예비	인증
경영지원 등	·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, 내용,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· 지원한도: 총 5회(연간 1회),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 원이내 · 자부담: 신청(계약)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~50%	○	○
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	·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* 대상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): 국가기관, 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863개소('23년)	-	○
시설비 등 지원	·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용자하거나 국·공유지 임대 등 지원 * 미소금융, 중소기업 정책자금, 희망드림론 협약보증,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,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	△ (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)	○
세제지원 제공	· 사회적기업에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그 후 2년 50% 감면 · 취득세 50% 감면·재산세 25% 감면 ·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%, 그 후 2년간 50% 감면 ·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	-	○
모태펀드	·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(예비)사회적기업 등에 투자(9개조합, 558억원 규모)	○	○

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

구분 (관련 법령)	내용
정관 등 변경신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(정관등)	· 사회적기업은 정관이나 규약 등(정관 등)의 기재사항 변경할 경우,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정관 등 변경 신고하여야 함 · 사회적기업은 지부 설립, 폐업이 발생하였을 경우,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지부 설립 및 폐업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- 관련 제출서류 등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내 '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' 참고
사업보고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(보고 등)	·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과 10월(연 2회)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- 관련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내 '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' 참고 *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(연 1회) 제출
인증서 재발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(인증서의 재발급)	· 사회적기업은 기관명, 대표자, 소재지, 조직형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,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- 관련 제출서류 등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내 '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' 참고 *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서 재발급 관련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